

1. 개정이유

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(트램펄린 일체형 등)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(무인영업 제한) 해소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자 준수사항(시행규칙 별표13) 중 관리인력 상주를 명시하되 어린이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여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
(안 별표13 제2호나목(6)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16. ~ 11. 25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3 제2호나목에 (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6) 사업자는 영업 중 관리인력이 상주하도록 하여 유기시설
- 유기기구 이용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단, 유기기구 · 시설 중 별표11의 2호 다목 2)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에서 중복관리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. 개별사항 가. 종합·일반유원시설업 (생략) 나. 기타유원시설업 (1) ~ (5) (생략) <u><신설></u>	2. 개별사항 가. 종합·일반유원시설업 (현행과 같음) 나. 기타유원시설업 (1) ~ (5) (현행과 같음) <u>(6) 사업자는 영업 중 관리인력이 상주하도록 하여 유기시설·유기기구 이용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단, 유기기구·시설 중 별표11의 2호 다목 2)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에서 중복관리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